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골 목 경 제 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구 미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출연코자함

나.「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출연기관 : (재)경북신용보증재단

(2) 대 표 자 :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중권

(3) 소 재 지 : 구미시 이계북로 7

(4) 출연예정액 : 금8,000백만원

(5) 출연금 사용처 : 보증대출금 미상환액 및 약정이자 대위변제

나. 사업내용

(1) 사 업 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2) 사업기간 : 2027년 ~ 보증 한도까지(자금 소진시 까지)

(3) 보증규모 : 출연금의 10배수 보증(예정)

(4) 지원대상 : 구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5) 지원한도

- 1인당 50백만원 이내
- 다자녀(2명이상), 청년창업자, 착한가격업소 70백만원 이내

(6) 상환방법 : 5년 이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택일

(7) 심사기준 :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용 심사기준표에 의거 항목별 저촉 여부 심사

(8) 지원방법

- 시 출연금 80억원의 10배수인 800억원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

(9) 지원현황

('26. 9. 23.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계	2013~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출연금(市)	18,600	2,600	1,000	미출연	1,000	2,000	2,500	5,500	4,000
출연금 (금융기관)	11,000				500		1,000	5,500	4,000
보증규모	334,000	26,000	10,000		15,000	20,000	35,000	132,000	96,000
보증금액	304,272	26,000	10,000		15,000	20,000	35,000	132,000	66,272
보증업체수	12,158	1,550	490		663	856	1,324	4,429	2,846

다. 출연 필요성

(1)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2)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자금 조달 부담 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 제18조

(2)「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3)「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 편성

다. 기　　타 : (재)경북신용보증재단 현황

[재]경북신용보증재단 현황

(1) 기 관 명 : (재)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시 이계북로 7)

(2) 설립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경상북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함

(3) 설립근거

-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례 :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4) 주요기능

- 창업 및 경영자금 관련 상담
- 사업계획, 경영성과 및 손익분기점에 관한 정보제공
- 소상공인 상권정보제공 등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화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금

2. 비용추계의 전제

- 출연금의 10배수 특례 보증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 출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 비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5. 부대의견 : 출연안 의결 후 예산부서 재정합의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 재정상황에 따라 예산 규모는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음

6. 작 성 자 : 골목경제과 로컬성장지원팀 이중탁(☎480-2612)

소 관 부 서		골목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박 영 희
	팀 장	배 미 영
	담 당 자	이 중 탁 (480-2612)